

(사) 가족기업학회 춘계 학술제

가족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방법

가수금 · 차등배당 · 유연대용신탁의 통합 설계

발 표 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김기영

2026. 05. 08.

목차

Table of Contents

/	총론 세 개의 해답 — 자금조달의 새 경로
//	가수금 전략 특정법인 + 사외이사 + 무이자 가수금
///	차등배당 전략 자녀법인의 부모법인 주식 1주 확보
///	신탁 설정 전략 경영권 유지 조건부 유언대용신탁
V	통합 결론 세 전략의 연계 로드맵

P A R T I

세 개의 해답

가족법인 자금조달의 새로운 경로

세 개의 열쇠

Three Keys to the Solution

01

성장의 열쇠

가수금

운영자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한다

02

이전의 열쇠

차등배당

유보이익을 자녀 세대로
효율적으로 옮긴다

03

승계의 열쇠

유언대용신탁

경영권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후계한다

먼저 자금을 넣고 · 다음 이익을 이전하고 · 마지막으로 승계를 고정한다

P A R T II

가수금 전략

특정법인 · 사외이사 · 무이자 가수금

1

STRATEGY I 가수금

설계의 출발

성장기 법인에 열린 길

빠른 성장이 필요할 때, 내부에서 먼저 답을 찾을 수 있다

가수금은 가족법인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유연한 자금원이다.

외부 차입과 비교해 빠르고, 절차가 단순하며, 이자 부담이 없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지분 분산 + 1억 원 기준 활용으로 안전 한도를 4배 확장

지분을 4인에게 분산하고
주주 1인당 1억 원 기준을 활용해
법인 전체 한도를 4배로 확장한다.

세 단계로 작동한다

법인 설립 — 절차 승인 — 무이자 가수금 투입

01

특정법인 설립

자녀·며느리·사위 각 25%
지배주주등 30% 이상 충족

02

사외이사 등기

부모가 이사회 의결 참여
특수관계 거래 승인 근거

03

무이자 가수금

주주 1인당 1억 기준 역산
법인 총 70-80억 안전 공급

3층 구조의 가수금 설계

자금 제공자 — 가족법인 — 자녀 주주의 이익 귀속을 분리한다

부 모

대여금 채권자
사외이사 또는 주주

가족법인

가수금 채무자
운영자금 수령

자녀 주주

25%씩 지분 보유
증여의제 이익 귀속

안전지대의 한도 역산

이론 한도와 실무 권장 한도를 분리해 설명한다

86.9

억원

이론 한도 | 계산식 $1\text{억} \div 4.6\% \div 25\%$ | 실무 권장 70-80억 원

두 조문의 결합 적용

상증법 § 45의5 × § 41의4

§ 상증법 § 41의4 ① ②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4.6%, 법인세법 시행규칙 § 43)보다 낮게 대출받은 경우,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년 이상 대출 시 1년 되는 날 다음날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본다. 연간 1천만 원 미만은 제외한다.

§ 상증법 § 45의5 · 시행령 § 34의5

지배주주등이 직·간접 30% 이상 보유한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출받는 경우 § 41의4를 준용한다. 주주 1인당 증여의제이익 1억 원 이상일 때 과세한다(시행령 § 34의5 ⑤). 2025.3.14 개정으로 자본거래까지 확대되었다.

30억 원 가수금 · 5년 후 채무변제

부모가 가족법인에 무이자 30억 원 대여 → 5년 후 영업이익으로 변제

연간 증여의제 계산

대출금액	30억 원
적정이자율	× 4.6%
연간 인정이자	= 1.38억 원
주주 1인 지분	× 25%
주주 1인당 이익	= 3,450만 원
과세 기준 (1억 원)	< 1억 → 과세 없음

5년 후 변제 시나리오

연간 변제액	6억 원
변제 기간	5년
총 변제 원금	30억 원
이자 부담	0원
변제 자금원	법인 영업이익
증여세 발생	없음

5년 후 30억 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법적 의무 · 회수 방식 · 세무 리스크를 나누어 검토한다

Q1

상환 의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면
법인은 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단, 만기 연장·분할상환
약정은 가능하다.

민법 §598 · §603②

Q2

네 가지 처리 선택지

- 1 영업이익 변제
- 2 출자전환 (DES)
- 3 채무면제
- 4 상속개시 전후 채권 정리

Q3

핵심 정정

부모가 넣은 가수금은
부모의 '채무'가 아니라
'대여금 채권'이다.

상속 시 자동 채무공제가 아니다.

부모가 사외이사· 주주로 가수금을 넣는다면

직함보다 중요한 것은 승인 절차와 이익 귀속이다

CASE 1 부모 = 사외이사

- 자기거래 승인 필요
이사와 회사 간 거래는 이사회 사전승인 대상
- 이사회 3분의 2 이상 승인
중요사실 고지와 공정한 거래조건 필요
- 서류 방어선
이사회 의사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금증

근거: 상법 § 398

CASE 2 부모 = 주주

- 주주 가수금 가능
실무상 가장 흔한 특수관계인 자금거래
- 부모에게는 대여금 채권
법인에는 가수금 채무, 부모에게는 받을 돈
- 자녀 주주 이익 검토
무이자 이익이 자녀 지분에 귀속되는지 계산

근거: 민법 § 598 · 상증법 § 41의4 · § 45의5

가장 안전한 기본값은 영업이익으로 점진 변제

법인이 실제 벌어들인 현금으로 원금을 갚는 구조라 세무 설명이 가장 쉽다

법적 구조

- 소비대차 반환
법인이 빌린 원금을 돌려주는 행위
- 변제기 약정
계약서에 만기·분할상환 조건 명시
- 무이자 유지
세법상 증여의제 계산은 별도 관리
민법 §598 · §603②

숫자 예시

- 가수금 30억
5년 분할상환
- 연 6억 변제
영업현금흐름에서 지급
- 이자 0원
주주 1인당 증여의제 이익 1억 미만 관리
상증법 §41의4 · §45의5

실무 체크

- 계약서
원금·만기·상환일정·무이자 사유
- 회계처리
법인 장부상 가수금 채무 인식
- 자금추적
입금·상환 계좌 흐름 보관
증빙이 곧 방어선

11

STRATEGY I 가수금

출자전환 (DES)

값을 돈을 자본으로 바꾸는 선택지

상환 부담을 줄이면서, 자본 확충과 지분 정리를 동시에 한다

<p>01</p> <p>채권 확인</p> <p>대여금 채권 금액 확정</p>	<p>02</p> <p>신주 발행</p> <p>현물출자 또는 상계 방식</p>	<p>03</p> <p>지분율 변화</p> <p>부모 지분 증가 기존 주주 희석</p>
--	---	--

절 차

주의 사항 · 꼭 확인 할 것

- 저가·고가 발행 시 기존 주주와 신주 인수자 간 증여의제
- 상법 절차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 납입·등기 필요

권장도 중간 — 부모는 채권→주식, 법인은 부채→자본의 동시 효과

부모(주주) 입장의 이익

- 지분 강화 주식 보유로 의결권·지배력 확보
- 배당 수령권 이후 이익잉여금에서 배당 가능
- 채권 회수 부담 해소 회수 불확실성 → 자본 가치

법인 입장의 이익

- 부채 감소 재무구조 개선, 부채비율 하락
- 자본 확충 신용도 상승, 추가 차입 여력 확보
- 현금흐름 부담 해소 원금 상환 의무 소멸

12

STRATEGY I 가수금

출자전환 → 상속

출자전환 이후, 상속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부모(주주) 가수금 → DES → 주식 전환 → 상속까지의 한 흐름



좋아진 점 · 채권 → 주식의 효과

- 현금 회수 부담 소멸 법인은 원금 상환 의무 없음
- 가업상속공제 연결 가능 주식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 가능
- 최대주주 할증 후에도 공제 적용 시 부담 완화

주의할 점 · 상속 평가가 달라진다

- 비상장주식 평가 순손익·순자산 가중 평가(상증법 § 63)
- 최대주주 할증 20% 할증 (중소기업 면제 가능 검토)
- 채권 30억 → 주식 가치는 회사 성장에 따라 변동

DES 후 상속 — '확정 채권 30억'에서 '회사 가치에 따른 주식 평가액'으로 바뀐다

13

STRATEGY I 가수금

채무면제

채무면제는 마지막 카드다

법인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익금 처리와 이월결손금 보전 여부가 핵심이다

원 칙

- 법인 채무 소멸
부모가 받을 돈을 포기
- 채무면제이익 발생
법인의 순자산 증가
- 익금 산입
각 사업연도 소득에 반영
법인세법 §15

완 충 장 치

- 이월결손금 보전
결손금 보전 총당분 익금불산입
- 결손 범위 내 설계
면제금액을 결손금 한도와 맞춤
- 회계 증빙
주주결의·채무면제확인서 필요
법인세법 §18 제6호

주 의

- 정상 사유
재무구조 개선 목적 명확화
- 주주 이익
자녀 주주 이익 귀속 검토
- 반복 금지
초기 설계부터 면제 목적이면 위험
사전 세무검토 필수

결 론

이월결손금 범위 안에서만 채무면제 · 영업이익 변제와 만기 연장을 먼저 시도하고, 결손금이 있을 때 보조적으로 검토한다

권장도 낮음 — 단독 카드가 아닌, 전체 처리 시퀀스의 마지막 보조 도구



PROBLEM 문제 제기

상속 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수금은 상속 시 '공제'가 아니라 '채권'으로 남는다

부모가 법인에 빌려준 돈은 부모의 받을 돈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실 제 일 어 나 는 일

- 상속재산 포함
대여금 채권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평가
- 법인은 채무 유지
상속인이 채권을 승계해 법인에 청구 가능
- 미정리 채권은 그대로 상속세 부담으로 남는다

상증법 § 13 · § 14 / 민법 § 598



SOLUTION 문제 해결

앞 페이지의 답 · 4가지 실무 해법

상속 전, 대여금 채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사전 상환 · 만기 연장 · 채무면제 · 신탁 편입 — 4가지 실무 선택지

01

RECOMMENDED

사전 상환

법인 영업이익으로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속 전에 상환한다.

부모 계좌로 회수된 자금은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거나 증여 설계에 활용한다.

권장도 높음

상속재산 자체를 줄이는 가장 깨끗한 방법

02

DEFERRAL

만기 연장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만기를 갱신·연장한다.

상속 시점까지 채권으로 유지되지만, 상속인이 승계해 분할 회수할 수 있다.

권장도 중간

민법 § 603② 약정 만기 연장, 매년 1년 단위 갱신

03

WAIVER

채무면제

부모가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다.

법인은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므로 이월결손금 범위 안에서만 설계해야 한다.

권장도 낮음

법인세법 § 15 익금 산입, § 186호 결손금 보전 총당

04

TRUST

신탁 편입

대여금 채권을 유언대용신탁에 편입한다.

수탁자가 채권을 관리하고, 사후수익자에게 수익권으로 이전한다.

권장도 중상

신탁법 § 59 유언대용신탁 + 가업승계 전체 설계와 연동

P A R T III

차등배당 전략

자녀법인이 부모법인 주식 1주 를 확보한다

1

STRATEGY II 차등배당

설계의 출발

유보이익을 여는 길

법인 단계에서 해법을 찾으면 세 부담이 가볍게 풀린다

부모법인에 쌓인 이익잉여금,
법인 단계에서 해법을 찾으면
세 부담이 가볍게 풀린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1주 보유로 배당 수령 주체가 법인으로 바뀐다

자녀법인이 부모법인 주식 1주만 가져도
대주주의 배당 포기를 통해
법인 단계에서 자금을 안전하게 수령한다.

1주 확보 후 불균등 배당

대주주 배당 포기과 자녀법인 수령 구조의 분리

부모법인

이익잉여금 보유
배당가능이익 존재

대주주

배당 포기
차등배당 결의

자녀법인

주식 1주 보유
초과배당 수령

세 단계로 작동한다

주식 취득 — 차등배당 결의 — 법인 수령

01

주식 1주 확보

자녀법인이 부모법인
주식 1주를 취득

02

차등배당 결의

대주주 배당 포기
자녀법인에 고액 배당

03

법인 수령

익금불산입 적용
개인 증여세 없음

법인이 수령하는 순간 개인 증여세 회로가 정리된다

이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한 줄

국세청 유권해석이 명시한 핵심 논리

국 세 청 유 권 해 석

서면-2022-법규재산-3155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았다고 하여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 조문이 만드는 안전지대

초과배당 + 익금불산입 + 주주평등원칙 예외

§ 상증법 § 41의2 (초과배당 증여)

최대주주 배당 포기로 특수관계인이 초과 배당 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시행령 § 32의4 11호: 1년 내 동일거래는 합산 판단. 단, 법인 수령자이면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별도 과세 안 함 (서면-2022-법규재산-3155).

§ 법인세법 § 18의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지분율 50% 이상 100% / 30~50% 80% / 30% 미만 30% 익금불산입. 단,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주식은 적용 제외 (반드시 3개월 전 취득).

판례 동향 · 주요 근거 판례

대법원 1980.8.26. 80다1263 (차등배당 유효) · 대법원 2023.7.13. 2022다224986 (주주평등원칙 예외 요건) · 대법원 2024.3.12. 2022두32931 (10년 합산)

7

STRATEGY II 차등배당

구체적 예시

10억 원 초과배당 · 두 경로의 세금 비교

부모법인이 자녀법인에 10억 원 차등배당 · 자녀법인 지분 1주 (30% 미만)

CASE A

개인이 직접 수령

배당소득	10억 원
증여세 (초과배당)	약 4.5억 원
배당소득세 (49.5%)	약 4.95억 원
실수령액	약 0.55억 원

CASE B

자녀법인이 수령

수입배당금	10억 원
익금불산입 (30%)	△ 3억 원
과세소득	7억 원
법인세 (19% 적용)	약 1.13억 원

세금 차이 약 9.45억 원 → 1.13억 원 · 약 88% 절감 효과

P A R T I V

신탁 설정 전략

경영권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승계한다

1

STRATEGY III 신탁

설계의 출발

창업주의 두 가지 소망

생전에는 경영권 유지 · 사후에는 안정적 승계

생 전 에 는

경영권 유지

- 의사결정 통제
- 현금흐름 유지
- 의결권 행사

사 후 에 는

절세를 활용한 안정적 승계

- 후계자 지정
- 가족분쟁 예방
- 경영 공백 축소

한 문장으로 말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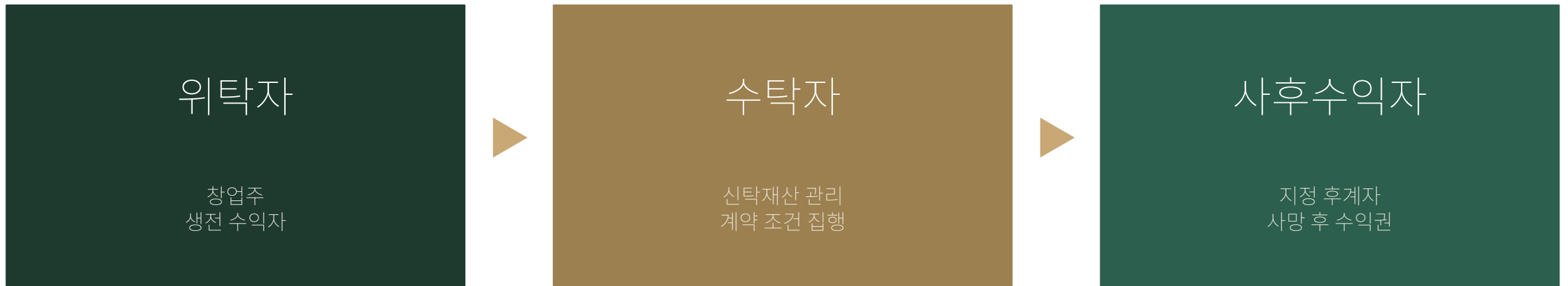
의결권과 수익권의 시간표를 분리한다

의결권은 위탁자가 생전에 유지하고
수익권은 지정 시점에 후계자에게 이전하고 공제를 활용해
경영 연속성과 절세를 활용한 승계를 함께 설계한다.

신탁의 본질 — 세금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경영권 공백을 막는 질서 설계

경영권 유지 조건부 유언대용신탁

주식은 수탁자에게 이전, 의결권은 위탁자가 생전 유보



세 단계로 작동한다

주식 신탁 이전 — 의결권 유보 — 사후 수익자 지정

01

주식 신탁 이전

창업주가 주식을
수탁자에게 이전

02

의결권 유보 조항

의결권은 생전
위탁자 지시에 따름

03

사후 수익자 지정

위탁자 사망 시
지정 후계자에 이전

위탁자가 생전 통제권을 지키면서, 사후에는 자동으로 승계가 진행된다

5

STRATEGY III 신탁

핵심 효과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경영 연속성 + 분쟁 예방 + 후계자 검증

01

경영 연속성

생전 의결권 유보로
통제권을 놓지 않는다

02

유언 분쟁 예방

수익자 지정이 명확해
가족 간 분쟁을 줄인다

03

후계자 역량 검증

조건부 승계로
준비된 후계자에게

신탁법이 여는 승계의 길

신탁법 § 59· § 60 × 상증법 § 9 · 민법 § 1112

§ 신탁법 § 59 · § 60

유언대용신탁: 생전 위탁자 수익자, 사망 시 사후수익자 수익권 취득 (§ 59). 수익자연속신탁 인정 (§ 60). 위탁자 수익자 변경권 유지. 수탁자 단독 사후수익자 지정은 § 36 위반.

§ 상증법 § 9 · 민법 § 1112 이하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24.7.11. 2019다294466 확정).

최신 판례 동향 · 대법원 · 헌법재판소

대법원 2024.7.11. 2019다294466 (유류분 기초재산 포함 확정) · 헌재 2024.4.25. 2020헌가4 민법 § 1112 4호 위헌 / § 1118 헌법불합치 (개선시한 2025.12.31)

신탁이 직접 세금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신탁의 역할은 ‘공제 적용을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일’이다

핵심 정정

신탁 자체는

세액을 깎아주지 않는다.

신탁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며,
신탁한다고 평가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절세의 진짜 출처는 **별도의 ‘공제 제도’**다

01 승계 안정성

후계자·승계 시점·지분 분배를 미리 확정해 사후관리 요건을 안정적으로 충족

02 경영권 공백 방지

위탁자 사망 즉시 의결권이 정리된 후계자에게 이전 — 분쟁·공백 없이 운영 지속

03 공제 사후관리 보조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 — 신탁 조항이 위반 위험을 줄여준다

신탁·공제 없이 그대로 상속하면

100억 원 가족기업 주식, 상속세를 단계별로 계산해 본다

상속세 계산 단계

① 주식 평가액	100억 원 <small>상증법 §60·§63</small>
② 최대주주 할증 (20%)	+ 20억 원 <small>상증법 §63③</small>
③ 상속재산 합계	120억 원 <small>①+②</small>
④ 일괄공제 (단순화)	△ 5억 원 <small>상증법 §21</small>
⑤ 과세표준	115억 원 <small>③-④</small>
⑥ 세율 적용 (50%)	× 50% <small>상증법 §26</small>
⑦ 누진공제·가산	± 조정 <small>최종 산출</small>
⑧ 산출 상속세	약 56억 원 <small>발표용 보수적 표현</small>

최종 상속세 부담

약 56억 원

100억 주식의 약 47%가 세금으로 빠진다

진짜 문제는 현금흐름이다

- 56억은 현금으로 납부 해야 한다
- 현금이 없으면 회사 주식을 팔아 마련
- 결과적으로 경영권이 흔들린다

절세는 ‘가업상속공제’에서 나온다

신탁은 이 공제 효과가 추징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조 장치다

01

회사 요건

중소·중견기업 등
가업 요건

02

피상속인 요건

10년 이상 경영,
최대주주 지분 요건

03

상속인 요건

18세 이상,
2년 이상 가업 종사,
임원·대표 취임

04

공제 한도

10년 300억 /
20년 400억 /
30년 600억

결론 — 절세는 누구의 효과인가

절세 효과 (약 56억 → 약 8억)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효과이지, 신탁 자체의 효과가 아니다.
신탁의 역할은 후계자 자격 확정·의결권 정리·사후관리 위반 방지 → 공제 효과가 추징 없이 유지되도록 보조한다.

실제 세액은 배우자공제·일괄공제·평가·사후관리 위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10

STRATEGY III 신택

56억 → 8억 계산

약 56억이 약 8억으로 줄어드는 계산

100억 가족기업 주식 · 가업상속공제 적용 전후 비교 (발표용 단순화)

CASE A 공제 없이 일반 상속

주식 평가액	100억 원
최대주주 할증 (+20%)	+ 20억 원
과세가액	120억 원
일괄공제 등 단순화	△ 5억 원
과세표준	115억 원
상속세율 (50% 누진)	고율 구간
산출 상속세	약 56억 원

CASE B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 평가액	100억 원
최대주주 할증 (+20%)	+ 20억 원
과세가액	120억 원
가업상속공제 (10년 한도)	△ 약 100억 원
일괄공제 등 단순화	△ 5억 원
과세표준	약 15억 원
산출 상속세	약 8억 원

차이 약 56억 → 약 8억 · 약 48억 경감 (약 86%) | 전제: 10년 이상 가업 · 사후관리 7년 충족 가정

유동성 · 생전 수익권

100억 원 가족기업 주식 신탁: 창업주 생전에는 현금흐름과 통제권을 유지한다

생 전

위탁자 = 수익자

배당·임대료 수익 수령

사 망 시 점

수익권 자동 이전

사후수익자에게

사 후

지정 후계자

배당·의결권 구조 승계

법 적 근 거 신탁법 § 59 유언대용신탁 · § 60 수익자연속신탁 / 상증법 § 9 신탁이익의 상속 · 증여세 과세 검토

효과 — 생전 현금흐름 + 경영 통제권 + 사후 승계 질서를 동시에 설계

P A R T V

통합 결론

세 전략의 연계 로드맵

통합 설계 로드맵

세 전략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보완재다

START

가수금

성장 초기 운영자금

특정법인 · 사외이사 ·
무이자 가수금

MID

차등배당

유보이익 자녀세대 이전

법인주주 1주 +
익금불산입 활용

LEGACY

신탁

경영권 유지 + 사후 승계

유언대용신탁 +
가업상속공제

References 1. 법령 · 유권해석 · 판례

발표 근거 법적 자료 목록

상증법

§ 9 · § 13 · § 14 · § 18의2 · § 41의2 · § 41의4
§ 45의5 · § 47 · § 60 · § 63

상증법 시행령

§ 32의4 · § 34의5 · § 53 (2025.5.7. 개정 반영)

법인세법

§ 15 · § 18 · § 18의2 · 시행령 § 17의2

상법

§ 369 · § 398 · § 462 · § 464 · § 538

신탁법

§ 36 · § 59 · § 60

민법

§ 598 · § 603 · § 1112 · § 1113 · § 1114 · § 1117 · § 1118

유권해석 · 판례

유권해석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3155
- 기획재정부재산-434 (2019.6.18.)

주요 판례

- 대법원 1980.8.26. 80다1263 (차등배당)
- 대법원 2023.7.13. 2022다224986 (주주평등)
- 대법원 2024.3.12. 2022두32931 (초과배당)
- 대법원 2024.7.11. 2019다294466 (신탁·유류분)

헌법재판소

- 헌재 2024.4.25. 2020헌가4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개선시한 2025.12.31)

References 2. 학술 논문

KCI 등재 학술논문 — 발표 주제 근거 문헌 6편

김민경 · 이상신 (2024)

특정법인을 통한 증여이익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41(4), 369-398

최준영 · 박종수 (2018)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4(2), 173-210

이보미 (2024)

차등배당에 관한 소고

기업법연구, 38(4), 185-211

김상훈 (2015)

유연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기업법연구, 29(4)

김상훈 (2021)

유연대용신탁의 현황과 과제
— 유류분과의 관계

가족법연구, 35(1), 149-

김동근 (2025)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가업상속세 감면 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18(3), 65-99